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224612 사해행위취소
원 고 기술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
담당변호사 김수정
피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균
변 론 종 결 2020. 11. 5.
판 결 선 고 2021. 1. 28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하여 2017. 2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19,603,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아래 <표1>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<표1. 보증내역>

(단위 : 원)

순번	보증번호	보증금액	보증일자	보증기한	대출과목
1	D	360,000,000	2012. 10. 30.	2017. 4. 26.	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
2	E	400,000,000	2012. 11. 30.	2018. 2. 23.	기업일반시설자금
3	F	85,000,000	2013. 12. 26.	2017. 3. 24.	기업일반자금대출
4	G	45,000,000	2016. 11. 9.	2017. 11. 9.	일반자금대출

나.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<표2> 기재와 같이 H 및 I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(이하 '이 사건 각 대출'이라 한다).

<표2. 대출내역>

(단위 : 원)

순번	보증번호	보증금액	대출기관(취급점)
1	D	360,000,000	H
2	E	400,000,000	H
3	F	85,000,000	H
4	G	45,000,000	H

다. 소외 회사가 2017. 3. 25.경 <표1>의 순번 3번 기재 대출의 원금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 <표3>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H 및 I에 합계 470,968,1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<표3. 대위변제내역>

(단위 : 원)

순번	보증번호	대위변제일자	대위변제원금	대위변제이자	대위변제금합계
1	D	2017. 6. 20.	189,900,000	3,062,332	192,962,332
2	E	2017. 6. 20.	144,000,000	2,355,761	146,355,761
3	F	2017. 6. 20.	85,000,000	1,253,947	86,253,947
4	G	2017. 6. 7.	45,000,000	396,123	45,396,123
계					470,968,163

라.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2016. 2. 1.부터 현재까지 연 10%이고,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,831,850원이다.

마. B은 2016. 12. 3. J과 사이에 B 소유의 부산 수영구 K 아파트 L호를 매매대금 515,000,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2017. 2. 15. J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금원(이하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하였다.¹⁾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8,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

1) B은 이 사건 금원 이외에 위 매매대금 중 80,000,000원을 배우자인 M에게, 20,000,000원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, 위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M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215697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. 7. 11.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4,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2017. 3. 25.경 H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을 연체하였고, 2017. 4. 11.경에는 I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조업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7. 2. 15.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. 원고는 실제로 2017. 6. 7. 및 2017. 6. 20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,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.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책임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,603,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윤경

별지

증여한 금원(수표)의 표시

- 발행일자: 2017. 2. 15.
- 발행자:
- 수표번호:
- 액면금액 : 119,603,824원